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가. 제출일자 : 1998년 8월 18일
나. 회부일자 : 1998년 8월 18일

3. 제안이유

- 지역정보화 사업사업으로 추진한 “충북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전자상거래시스템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
- 중앙부처장관의 명령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제22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사업 중 일부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규정을 신설
- 제6조 제1항 내용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

5. 검토보고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운영·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

-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(안)